

임회면 귀성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0. 03

 **진도군**

목 차

제 1 장 사업의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3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5
1.4 사업의 내용	5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대상지역의 설정	6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6
2.2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6
2.3 평가항목·범위·방법의 설정	8
2.4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10
2.5 평가항목의 설정	11
제 3 장 대안선정 및 비교·검토	14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14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20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0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21
5.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21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임회면 귀성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차폭이 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하며 사업구간 주변으로 주거지역, 사육시설 등이 위치해 있는 바, 겨울철 동결현상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교통정체 유발 및 지역주민의 보행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농후한 구간을 대상으로 급회 확·포장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구간 주변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귀성항 진·출입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차량, 농기계, 주민 및 이용객들이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사진 1-1> 사업구간 현황 사진



<그림 1-1> 사업구간 현황 및 조망점 위치도

1.2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근거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1> 전략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관련조항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3. 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p> <p>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정책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p> <p>2.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p> <p>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p> <p>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p>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p>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2]와 같다.</p>

<표 1.2.1-2>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제7조 및 22조제2항 관련)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과. 특정지역의 개발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제2항에 의거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승인등 전

1.2.3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을 14일 이상 공개하는 바임.

<표 1.2.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p>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p> <p>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20. 03.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약 및 용역 착수
- 2020. 03.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0.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 2020. 05. : 전략(본안)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전라남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 2020. 06. :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4 사업의 내용

1.4.1 사업명

- 임회면 귀성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4.2 사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116-1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1.4.3 계획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

- 수립권자 : 진도군
- 승인권자 : 전라남도

1.4.4 사업내용

- 면적 : 16,986.8m²
- 도로연장 : L=1.40km(도로개설 L=0.80km, 도로포장 L=0.60km)
- 도로폭 : B=8.0m~12.0m(왕복2차로)
- 설계속도 : 30km/hr
- 총 공사비 : 2,687.31백만원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대상지역의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사업 특성, 입지여건, 지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별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제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예측하고자 설정함.

2.2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의 특징 및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황조사 범위와 예측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함.
- 따라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주요 평가항목별 영향요인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분 설정함.

2.2.1 사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116-1번지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2.2.2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설정

-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은 항목별 특성에 따라 광역평가지역과 중점평가지역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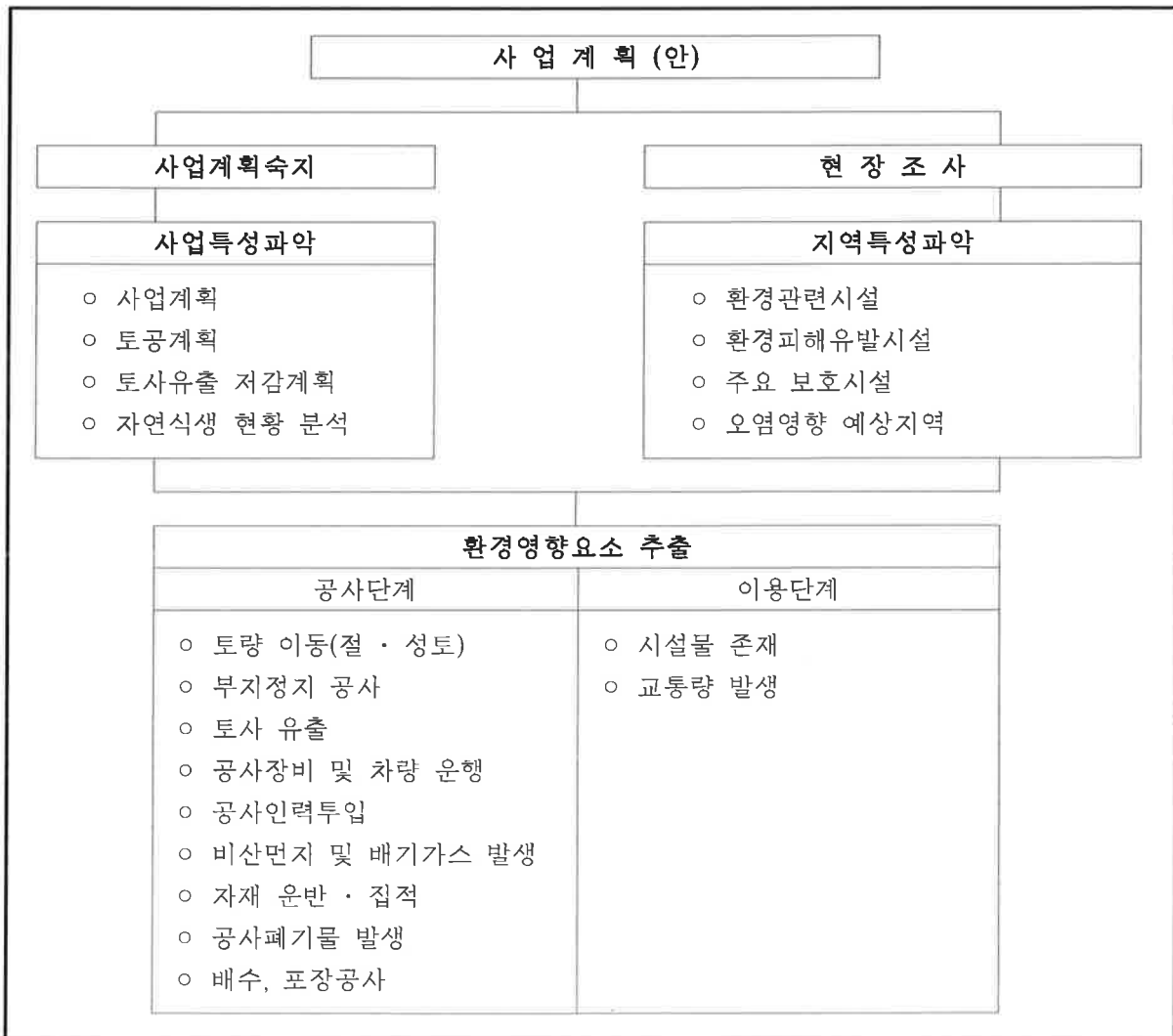
<표 2.2.2-1> 평가항목별 검토대상범위

평가항목		현황조사범위		예측범위		
				시간적	공간적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광역	○ 진도군 및 임회면 ○ 사업구간 반경 500m	-	○ 주요 보호종 분포여부 조사	
		중점	○ 사업구간	○ 공사시, 이용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 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광역	○ 진도군 및 임회면 ○ 사업구간 반경 500m	-	○ 보전가치 지형·지질 분포여 부 조사지역	
		중점	○ 사업구간	○ 공사시, 이용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화 예상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광역	○ 진도군 및 임회면	-	○ 광역 경관지역	
		중점	○ 사업구간 및 주요 조망점	○ 공사시, 이용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상지역	
수환경 의 보전	수질	중점	○ 사업구간 관련 수계	○ 공사시, 이용시	○ 하류부 수질 영향 예상지역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광역	○ 진도기상대	○ 2008~ 2017년	○ 기상자료(기상청)
		대기질	중점	○ 사업구간 반경 500m	○ 공사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소음· 진동	중점	○ 사업구간 반경 500m	○ 공사시	○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권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광역	○ 진도군 및 임회면	○ 2017년	○ 진도군 폐기물 발생현황 조사	
		중점	○ 사업구간	○ 공사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각종 폐기물 발생 지역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광역	○ 진도군 및 임회면	○ 2017년	○ 진도군 일원 토지이용 현황조사 ○ 입지현황 조사
중점			○ 사업지구	○ 공사시, 이용시	○ 토지이용 변화 예상지역	

2.3 평가항목 범위 · 방법의 설정

2.3.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환경요인을 단계별로 구분하였으며, 환경항목의 조사 및 예측 · 검토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시 전단계에 걸쳐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공사단계와 이용단계로 구분하여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함.



<그림 2.3.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모식도

<표 2.3.1-2>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분	공종	환경영향요소	비고
공사단계	동·식물의 서식환경 변화	·식생훼손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서식환경 교란	
	토지이용변화	·경관변화	
	지형의변화	·각종공사(토공사 및 부지정지, 구조물)로 인한 지형의변화	
		·각종공사(특히, 토공사 및 부지정지)로 인한 토사유출	
	장비가동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폐유 발생			
공사인부의 활동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오수발생		
경관변화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운영단계		·지역주민의 차량이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교통소음 증가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2.4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방법은 Leopold가 고안한 행렬식 대조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상호평가는 상호관련성 크기를 부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부호와 숫자는 <표 2.4-2>에 제시한 바와 같이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며, 작성된 행렬식 대조표는 <표 2.4-1>에 제시한 바와 같음.

<표 2.4-1> 환경영향요소와 검토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단계별	평가항목 환경영향요소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대기질	소음·진동			
공사단계	토 량 이 동 (절 · 성 토)	□		□	△	□	□	△			▲
	부지정지 공사	△	△	○	△		△	□			■
	토 사 유 출	△	△	○	△		△	□			■
	공 사 장 비 및 차 량 운 행	△				△	△	△		△	
	공 사 인 력 투 입					△	□	□		□	
	비 산 먼 지 및 배 기 가 스						□				
	자재운반·집적						△	△			△
	공사폐기물 발생							△		□	
	배 수 공 사					■		△		△	■
이용단계	포 장 공 사				▲	△	▲	▲		△	■
	시 설 물 존 재		△					▲			■
	교 통 량 발 생						△	△			

<표 2.4-2> 행렬식 대조표 등급설정기준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등급	영향 또는 관련성의 내용
+3(●)	개발되면 상당히 좋다.	-1(△)	악영향은 있으나 미약하다.
+2(■)	개발되면 비교적 긍정적이다.	-2(□)	악영향이 다소 있다.
+1(▲)	개발되면 긍정적이거나 크기는 작다.	-3(○)	악영향이 크다.

2.5 평가항목의 설정

2.5.1 주요 평가항목의 설정

- 사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2.5.1-1〉 주요 평가항목의 설정사유 및 검토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설정 사유	검토사항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식생 및 동물상의 서식형태 변화 ○ 환경부 지정 주요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및 변화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 현황조사 및 생물상 변화 예측 ○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로 인한 자연형질 변화 ○ 도로 확·포장 및 일부구간 신설로 인한 지형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의 훼손정도 및 처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변화 - 절·성토 법면 처리대책 ○ 토공계획 ○ 토사유출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확·포장 및 일부구간 신설로 인한 경관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확·포장 및 일부구간 신설에 따른 경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업시행후 경관 보전 대책 수립 	
	수 환경의 보전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관 수계 및 편입지역내 오염원 분포 현황조사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부 지역 영향 여부 -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유출에 따른 인접 하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발생오수 처리계획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이동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장비 투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영향 예측
		소음· 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현황 및 처리대책 ○ 소음환경기준 달성 및 유지여부
생활 환경의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인력 투입에 의한 생활 폐기물과 분뇨 발생 - 건설장비 투입으로 인한 폐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실태 파악 ○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장비 및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대책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요소 등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검토 ○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2.5.2 평가항목·범위 설정 및 사유

가. 주요 평가항목 설정

- 본 계획의 특성과 부합하도록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대기, 수질, 지형·지질, 친환경적자원 순환, 소음·진동, 토지이용, 경관 총 9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함

〈표 2.5.2-1〉 평가항목의 설정 및 사유

세부평가항목	설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여부검토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의 서식지 영향발생 검토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주요 능선 및 생태축 등 지형의 훼손여부 검토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조경, 건축물 등의 경관의 변화가 예상됨
(4)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토목공사로 인한 하류수계의 영향발생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의 부합성 (대기, 소음진동 등)	· 공사시 토공작업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예측 및 검토 · 공사시 및 운영시 장비운영 및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진도군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계획을 고려한 처리가능 여부 파악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인부 및 장비투입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영향검토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 환경친화적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발생

나. 현황조사 항목 및 제외항목

- 주요 평가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그 영향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현황조사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환경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제외함.

<표 2.5.2-2> 현황조사항목과 제외항목

항목		설정 사유	검토사항
현황조사항목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나 수질과 대기질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	○ 진도기상대의 10년간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각 기상항목별로 분석, 경향을 파악
제외항목	교통	○ 교통 영향 및 변화 없음	-
	문화재	○ 문화재 영향 및 변화 없음	-
	해양환경	○ 해양관련 영향 및 변화 없음 - 해안과 인접한 구간은 도로 포장만 실시할 계획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탉방지막을 설치하여 해양 유입을 방지토록 할 계획임.	-
	악취	○ 악취 발생 관련 영향 및 변화 없음	-
	전파·일조장해	○ 전파·일조장해 영향 및 변화 없음	-
	인구·주거	○ 인구 유입, 주거환경 변화 없음	-
	산업	○ 산업 영향 및 변화 없음	-
	위생·보건	○ 위생·보건 영향 및 변화 없음	-
공공시설·교육	○ 공공시설·교육 영향 및 변화 없음	-	

제 3 장 대안선정 및 비교·검토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방법

3.1.1 대안의 종류

○ 대안의 선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 및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의 발전촉진형 계획에 근거하여 대안의 종류 및 대안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함.

- 본 사업구간의 대안 선정은 “계획비교”, “입지”에 대안을 선정하여 비교·검토를 실시 후, 최 적안을 선정하였음.

<표 3.1.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종류	선정 방법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3.1.2 대안의 비교 · 검토

○ 본 사업은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계획수립 및 계획미수립) 및 입지로 설정하여 검토함.

<표 3.1.2-1> 계획 비교 대안설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선정(제외)사유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선정	○ 행정계획수립(Action) 및 행정계획미수립(No Action)에 따른 환경적인 비교 분석에 따른 대안 선정
수단 · 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확·포장 사업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수요 · 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 · 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 · 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존 도로 확·포장 및 일부구간 신설을 하는 사업으로 수요 및 공급의 대안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지구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선정	○ 개발 대상 입지가 결정된 상태이나 경계 일부를 조정 검토한 바 대안으로 선정
시기 · 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본 사업은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에 해당되지 않음.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음.

3.1.3 대안 선정내용

○ 대안 선정은 계획비교(계획수립 및 계획미수립)과 입지(경계 일부 조정)로 설정하여 검토함.

<표 3.1.3-1> 대안 선정내용

구분		대안 설정내용
계획 비교	계획수립(action)	○ 사업계획 수립 시행
	계획미수립(No action)	○ 현 상태 유지
입지	계획구간	○ 대안 1 L = 1.4km(도로 개설 L=0.6km, 도로포장 L=0.8km) ○ 대안 2 L = 1.4km(도로 개설 L=0.8km, 도로포장 L=0.6km)



<그림 3.1.3-1> 사업구간 비교 노선도

3.1.4 대안의 비교

가. 계획비교

- 행정계획수립(Action) 및 행정계획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4-1〉 대안검토(행정계획 수립 및 행정계획 미수립)

구분	계획수립안(action)	계획미수립안(No action)
사업내용	○ 대안 1 L = 1,530m ○ 대안 2 L = 1,400m	○ 현상태 유지
장점	○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의 긍정적 영향 예상 ○ 인근 아리랑마을 관광지와 연계하여 접근성과 용이성을 이용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 할수 있음. ○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교통 체증 감소 예상	○ 기존도로를 유지함에 따라 생태계 및 공사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발생 없음.
단점	○ 사업시행에 의한 인근 수계 및 인근주민들의 환경오염요소 노출 우려	○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한 사업구간 주변 지역민들의 안정성 미확보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나. 입지

- 대안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평가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표 3.1.4-2〉 대안검토(입지)

평가항목		대안 1	대안 2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농경지 일부 개발 - 농경지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	○ 기존 도로 확·포장으로 생물다양성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대안 1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기존 농로를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 개발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안 - 현 지형 최대 활용	○ 기존 도로를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 개발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안 - 현 지형 최대 활용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기존 농로 확·포장으로 인근농경지 경관 변화 예상안	○ 기존도로 확포장 및 일부 신설 구간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안
	수환경의 보전	수질 ○ 공사시 - 토사유출, 공사인부 오수 발생 예상안	○ 공사시 - 토사유출, 공사인부 오수 발생 예상안

<표 3.1.4-2> 계속

평가항목		대안 1	대안 2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인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 운용으로 인한 대기질 저하 예상안 사업구간과 인접하여 다수의 주거지역 및 양식장이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일시적인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 운용으로 인한 대기질 저하 예상안 사업구간과 인접하여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나 대안1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일시적인 공사 소음·진동 발생 예상안 사업구간과 인접하여 다수의 주거지역 및 양식장이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일시적인 공사 소음·진동 발생 예상 사업구간 주변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나 대안1에 비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
생활 환경의 안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오수 발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오수 발생 예상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경지 편입으로 주민 반대 예상 사업구간과 인접하여 주거지가 위치하여 통행 불편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근 아리랑마을 관광지와의 연계하여 토지이용상의 긍정적 영향 예상 농경지 미편입, 기존도로 확·포장 및 일부구간 신설로 대안1에 비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안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농로를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 개발로 인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에는 영향이 미미하며, 절·성토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 기존 농로 확·포장으로 인한 농기계 등 차량통행의 해소와 종전보다 생활환경 증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 편입이 없으며 아리랑마을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높음 기존 도로 폭이 좁아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귀성향 진·출입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차량, 농기계, 주민 및 이용객의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개선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구간 주변 가옥 및 양식장 등에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에 의한 피해 예상 농지 편입이 많으며 아리랑마을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성마을 진·출입시 차량 통행 불편 및 소음, 분진 영향 예상 일부 신설구간 개설로 인해 대안 1에 비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영향 및 절·성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 	

3.1.5 대안별 평가결과 및 최종선정안

- 본 “임회면 귀성향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대안설정은 “계획비교”로 계획수립(action)과 계획미수립(No action), “입지”으로 대안 1~2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 “계획비교”의 최적 대안은 기존 차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 확·포장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객의 안전한 운행을 할수 있도록 계획한 계획수립 안(action)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됨.
 - “입지”의 최적 대안은 대안 2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보다 고려한 대안으로 검토되어 이를 최적 대안으로 선정함.
- 따라서, “임회면 귀성향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최종 대안은 “계획수립(action), 대안 2”로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표 3.1.5-1〉 최종 대안

구분		대안 설정내용	선정안	선정사유
계획비교	계획수립안	사업계획 수립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민들의 안정성 확보와 주변 관광지 진·출입시 교통원활 및 교통사고 예방
	계획미수립	현 상태 유지		
입지	대안 1	L = 1.4km (도로 개설 L=0.6km, 도로포장 L=0.8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 1 : 개발로 인한 농경지 편입 및 주변 정온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환경영향 및 주민반대가 예상됨. ○ 대안 2 : 농지 편입이 없으며 대부분 기존 도로 확·포장이며, 일부 신설도로는 전, 답 위주의 개발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아리랑마을 관광지, 귀성향 진·출입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차량, 농기계, 주민 및 이용객의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안 ○ 따라서, 농경지 미편입 및 아리랑마을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높이며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최대 효과가 예상되는 대안 2가 보다 친환경적 이용이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됨.
	대안 2	L = 1.4km (도로 개설 L=0.8km, 도로포장 L=0.6km)	○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본 사업의 사업계획면적은 16,986.8㎡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생략함.

<표 3.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미개최 근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규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진도군 홈페이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를 공개하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이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본 사업계획 관련 주요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람기간동안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함(공람장소는 진도군과 추후 협의하여 최종 결정)

<표 5.1-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재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청 홈페이지 (www.jindo.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 게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국토 계획에 이용에관한 법률 28조, 같은법 시행령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 공고·공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람기간 : 14일 (공휴일 제외) - 신문공고 : 중앙 및 지방일간 각 1회 이상 - 의견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14일간) ○ 관계기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시장·군수·구청장 - 승인기관의 장 - 협의기관의 장 - 유역·관할지방환경관서의 장 -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60일 이내 의견 통보

<표 5.1-1> 계속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의견수렴계획
공청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30명 이상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출 주민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퍼센트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최할 예정 ○ 공청회 개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에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토록 함.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재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청 홈페이지 (www.jindo.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 게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이상